

# 내포신도시 모아미래도 메가시티2차 소득증빙서류 및 자산보유기준 안내문

## 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

구분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- 출산 휴가 및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: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※ 직인 날인 된 원본 제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(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)으로 발급 ※ 직인 날인 된 원본 제출	• 해당직장 • 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 날인 된 원본 제출 ②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-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※ 직인 날인 된 원본 제출	•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※ 직인 날인 된 원본 제출	•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재직증명서 ②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직인 날인 된 원본 제출	•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	•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	• 국민연금 관리공단 •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(정수원부로 발급)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-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	• 국민연금 관리공단 •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또는 법인결산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※ 원본 제출	• 세무서 • 등기소
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※ 직인 날인 된 원본 제출	• 세무서 •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•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 기간 및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-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: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※ 직인 날인 된 원본 제출	• 해당직장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 1일부터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• 견본주택	

※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"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" 및 "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"에 따릅니다.

## ■ 소득초과자 자산보유기준

아래 부동산(건물+토지)의 부동산가액이 3억 3,100만원 이하			
건축물	•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		
	건축물 종류	지방세정 시가표준액	
	주택	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	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
		단독주택	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
주택 외	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		
토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 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</li> <li>• 「농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 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</li> <li>• 「초지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「축산법」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</li> <li>•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</li> <li>•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</li> <li>•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</li> </ul>		

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